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0. 12.

사회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영등포구 사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며 감사를 통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감시를 제고하고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0.11.26(금) ~ 2010.12.2(목)

3. 감사실시대상 및 사무

○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3호
-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전부서

○ 사무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해당사무
-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자치구 사무

4. 감사반의 편성

○ 감사총괄 :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가나다순)	사무보조
윤준용	이재형	김길자, 김종래, 김주범 신흥식, 오현숙, 최재문	전문위원 사무국 직원 속기사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	비 고
2010.11.26 ~ 2010.12.1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	복지국	- 현황보고 및 청취 - 서류확인 - 개별감사 - 현장확인
			도시국	
			건설국 도시시설관리공단	
2010. 12.2	오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및 감사결과 정리	
	오후		공개질의 및 답변	- 종합평가 - 강평

※ 토요일~일요일 : 지역의정활동 및 2011년도 예산안 사전심사

6.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가. 일일보고

- 감사직후 부위원장은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일일보고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나.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여 본회의 상정·의결

7. 시정 및 지적사항 : ‘별첨’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사회건설위원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1	2010. 11.26 (금)	김주범	2006년 기초생활보장기금 고유 목적사업비 지출액 40,000천원 에 대한 지급결의서 등 지출내 역 증빙서류 미비	향후 기금 지출내역 증빙서류를 누락없이 구비하고, 지출 건별 회계서류 보관·관리 에 철저를 기할 것.
2	2010. 11.26 (금)	김주범	2010. 10월 현재 기초생활보장 기금 조성액이 1,049,925천원 이 나, 기금의 조성목적과 달리 6년동 안 집행금액이 80,000천원에 불 과함.	기금의 목적대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기금이 제대로 활 용·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
3	2010. 11.26 (금)	오현숙	대림3동 611번지 옛 청소차고지 에 2010. 10월부터 추진한 「어 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조성사업」 이 사업부지에 인접한 현대3차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여 사업추진 불가 결정(2010.11.22) 되었는 바, 적기 주민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하여 행 정력을 낭비하고 시비 지원액(6 억원)을 반납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결과적으로 타구의 동종 사업 추진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음.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조성에 필요한 타 부지 물색 등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기 바 라며, 사업을 입안하고 추진함에 있어 사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하여 행정 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토록 할 것.
4	2010. 11.30 (화)	김주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조 성 및 사업목적에 맞지않게 사 무용기, 사무용품, 종이컵 등의 구입에 여러차례 지출하였음.	향후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고유목적사업 비 지출에 적정을 기할 것.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5	2010. 11.30 (화)	최재문	영등포역 뒤편 및 영등포공원 주변 노숙인의 야간 인근 주택 가 노숙에 따라 지역주민이 불 편을 호소함.	동 지역 노숙인 보호·관리를 보다 철저 히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
6	2010. 11.30 (화)	최재문	신길3동 무단투기 실태에 비추 어 이를 단속할 수 있는 CCTV 가 부족함.	신길3동 무단투기 취약지점 등에 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할 것.
7	2010. 12.1 (수)	이재형	공단 직원 급여체계 및 주차관리 원 처우개선 문제	○ 공단 설립 초기의 전직 경력에 기준한 호 봉산정에 기초하여 연봉제를 시행함으로 써, 상하 직급간 임금 역격차가 발생하는 기현상을 초래하므로, 공단 직원 급여체계 상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는 등 시정조 치가 필요함. ○ 주차관리원의 임금이 현행 최저임금액 이므로 기본급 인상 시 공단의 수익구조 에 부담이 된다하더라도, 복리후생비 등 간 접적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임금보전 대책을 강구할 것.
8	2010. 12.1 (수)	김길자	보육시설에 대한 감사 및 현장점검결과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부적정한 사례가 있음. (사례1) ▶ 학원, 어린이집의 구분이 불 분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 출입구 간판에 인가된 ○○어 린이집이 아닌 ○○school, ○○ 원 등 다른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음	지적된 사례들로 보아 상당수 보육시설이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을 개연성이 있으 므로 구에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지적사 항에 대하여는 「영유아 보육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시정 조치할 것.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출입구를 통해 학원(00미술학원, 00어학원)을 출입하게 되어있음.(미술학원 출입구 폐쇄상태) · 시설내부구조 무단변경 · 보육실 불법 변경 사용(1층에 인가된 3개 보육실의 문을 닫아 놓고 2층과 3층을 사용) · 미술학원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보육(체육특기교사) <p>(사례2)</p> <p>▶ 정원초과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등록 원아가 있으며, 정원 초과 보육(※ 정원 74명, 현원 72명이나, 2010.11.29. 점검 당시 보육아동이 119명임.) · 현재보육중인 원아출석부 미비치 · 어린이집 대표자 및 시설장이 지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거나, 점검 당시 부재상태에서 교사의 전화통화 시도에도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의 여지가 있어 결국 보육중인 교사들이 아동명단 제출하여 확인.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p>(사례3)</p> <p>▶ 재무회계규칙 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결의서를 일자별로 정리하지 않고, 세목별 합계방식으로 작성하였으며,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미첨부 다수건 등 관련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 적출 	
9	2010. 12.1 (수)	김종태	<p>○ 2010년 11월 현재 설치된 여의도 자전거 도로로 인하여 차량의 심각한 정체가 발생되고 있고,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과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고 있음.</p> <p>○ 현재 여의도는 국제금융센터와 PARK I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여의도 전역의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완전한 자전거 도로망은 재개발 시점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p>	<p>○ 자전거 도로의 재검토를 서울시에 요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셋강길과 한강변길은 셋강과 한강공원에 기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가 셋강과 한강공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접근 도로를 확보 및 기 설치된 자전거 도로 폐쇄 ·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와 차도 사이 녹지대 설치·확보할 수 있는 도로만 자전거 도로 설치 · 교통량이 많은 편도 2차선 이하 자전거 도로는 폐쇄 · 일방통행로에 양방 자전거 도로 설치된 곳은 재검토 · 자전거 운전자 안전을 위한 조치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 <p>○ 자전거 도로 재검토 시 주민의견 수렴</p> <p>○ 신규 도로 확장 시 자전거 도로 확보</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10	2010. 12.1 (수)	김종태	<p>○ 2007년 1월부터 가로청소 용역 위탁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왔는 바, 당시 위탁용역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약 4억 5천만원이었으며, 현재까지 4년간 누적효과는 18억원 예상됨.</p> <p>○ 위탁 시범사업 후 4년간 위탁 시범사업 평가가 없었으며, 확대 적용을 하지 않고 있음.</p>	<p>○ 가로청소 용역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p> <p>○ 가로청소 용역 위탁 확대</p>
11	2010. 12.1 (수)	신홍식	<p>과거 민원행정에서 복지행정으로 전환되어가는 추세에 따라 사회 복지 전담 직원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p> <p>1) 동주민센터 정원은 250명이나, 행정수요에 따라 현원은 269명이며 이 중 사회복지직 직원은 현원의 12.2%인 33명에 불과하여 늘어나는 복지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p> <p>2) 2006년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수급자 가구 150~200가구당 사회복지직 1명을 근무토록하고 있는 바, 우리구 수급자 가구수(5,723가구)를 감안하면 29명~38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있음.</p> <p>그러나 위 지침은 4년전 기준으로 현실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음.</p>	<p>향후 늘어나는 복지업무의 원활을 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직 정원의 증원이 타당한 바, 관계부서에서는 관련 정원 조례 및 규정상 정원 조정을 적극 검토할 것.</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p>3) 2010년 보건복지부 기준지침에 의하면, 현원 대비 40%의 복지담당 직원(96명)을 확보토록 되어있어 이는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임.</p> <p>이러함에도 18개 동주민센터의 복지지원팀 현원은 총 67명(행정직+사회복지직)으로서 동 지침을 적용하면 29명이 부족한 실정임.</p>	
12	2010. 12.1 (수)	신홍식	<p>주관부서(도로과) 동절기 제설대책안에 의하면, 모든 상황 대비 비교적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선 동주민센터 동장 및 팀장이 해당 동 관련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미흡함.(7개동 중 3개동)</p> <p>※ 무작위 전화 확인결과 미숙지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설자재(염화칼슘, 소금) 전체 보관량 · 염화칼슘 보관의 집 현황 · 강설단계별 근무기준 등 	<p>○ 동절기 구정업무 중 가장 비중이 있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전체적으로 인식을 새롭게 하고,</p> <p>○ 주관부서에서는 제설대책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전직원 및 주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갑작스런 강설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13	2010. 12.1 (수)	신홍식	<p>○ 2010년 4월~7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던 사회적약자(아동·청소년·여성)를 대상으로 한 범죄사건과 관련, 우리구에서도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나, 이후 아래와 같이 운영 및 실행 등 추진이 부실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부서(가정복지과)의 주도적 대응 미흡. · 종합대책에 의하면, 유관기관 회의를 월 1회 시행토록 되어있음에도 부구청장 주재 유관기관 관계관 회의실적이 전무하며, 실무자 회의도 현재까지 5개월동안 2회에 불과하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아 회의내용을 알 수 없음. <p>○ 관계부서의 인식이 부족하여 부서간 업무협조가 미흡함.</p> <p>○ 학교 경비부스 설치, 초등학교 전원에게 호루라기 지급 등 초기 지원 후 지원사항의 적정 운영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지도감독이 소홀함.</p>	<p>집행부의 종합대책에 따른 이행 및 추진사항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아동 등 범죄취약대상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14	2010. 12.1 (수)	신홍식	<p>○ 서울시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시설 및 운영 전반의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의 일부라도 보조하여 어린이 교육 및 시설 향상을 도모하고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예산(150,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연말인 현재 일부 시설에는 아직까지 미지급된 상태임.</p> <p>※ 예산지원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시설수(2010년 10월말 현재) : 137개소 · 지원 시설수(2010년 11월말 현재) : 125개소 <p>○ 감사자료로 제출한 ‘2010년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현황’ 내용 중 수치상 오류사항이 있음.</p>	<p>○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비가 미지급된 시설(12개소)에 조속히 예산지원할 것.</p> <p>○ 감사자료 제출 시 철저한 서류검토 후 제출할 것.</p>
15	2010. 12.1 (수)	오현숙	<p>○ 님비(NIMBY) 현상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의 거점이 대로변이나 공공시설 등에 위치하여 배출거리가 멀리 떨어져 불편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공공장소 방문·이용에도 불쾌감을 초래함.</p> <p>○ 또한, 수거용기 세척 시 도로변 수압세척으로 악취를 발생하고 세척오물을 길거리에 방사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며 각종 균의 대기 노출로 전염병이나 기타 질병 유발 등 위생상 위험요인이 되고 있음.</p>	<p>○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가 골목 안에 위치토록 하고,</p> <p>○ 세척방법은 수거 후 일정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전용세척시설을 갖춘 이동식 기기를 사용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요함.</p> <p>○ 수거용 봉투와 소형 수거용기를 1주 택 1개씩 보급하여 자체 관리토록 하면서 구에서는 수거만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등 수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16	2010. 12.2 (목)	윤준용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이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취업박람회, 일 자리 데이, 장애인 취업박람회 중장년 채용박람회, 일자리 설 계사, 취업대비 교실, 일자리 발 굴단 등 여러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보이나 예산 및 실적이 미흡함.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기 바람.
17	2010. 12.2 (목)	윤준용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일상경비 지출 시 간이세금 계산서로 회 계처리하고 있음.	○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 비 및 물품의 구매로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에 도, 아직도 각 과에서 부서운영 업무추 진비 지출 시 간이세금계산서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는 바, ○ 추후에는 반드시 업무지침에 따라 카 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할 것.
18	2010. 12.2 (목)	이재형	최근 2년간 아트홀 공연 및 문 화관광 홍보 사업 감사 - 공연팀 아트홀 공연의 장르 별 파악 및 시기별 공연 컨셉 파악·검토 - 관광안내지도, 가이드북의 제작 경위 및 제작단가의 적절 성 여부, 기타 관내 관광 활성 화를 위한 문화재지도 등의 기 초DB 구축 여부	○ 구민회관 내의 아트홀의 설립 계획 시 공연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전용극장으로서의 기능이 취약, 향후 구 차원의 전용극장설치를 장기적 계획하 에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연간 공연 내용별로 파악하면, 구의 시기적 요구,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야하 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공연의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는 구조, 그러므로 2011년부터는 기존의 계절적 시기적 외부 환경의 요구에 얽매이는 공연기획을 탈피 할 것을 주문.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p>○ 현재 주력 홍보물인 관광안내지도와 가이드북의 홍보효율성과 과도한 제작기획비에 대한 지적. 홍보물 수준에 맞지않는 기획업체를 선정된 것이 문제. 향후 이러한 기획비에 대한 지출을 신중히 할 것.</p>
19	2010. 12.2 (목)	이재형	<p>노인요양공동가정 사업에 대한 사항 - 해광빌딩 매입과정 및 2008년 당시 구의 사업추진과정에서의 행정적 처리 실태</p>	<p>○ 2008년 1차 매입 당시 감정평가 거치지 않음. 매매계약서의 부실 지적(표준계약서 사용하지 않음.)</p> <p>○ 2008년11월 계약서 작성자의 필체와 2009년 6월 계약서 작성자의 필체가 동일, 법정 공인중개업체를 거치지 않은 건물주와의 직접계약서임에도 공증도 받지 않음.</p> <p>○ 건물 낙찰과정과 구의 매입 추진과정의 시기적 연관성을 보아 이미 사전에 건물주와의 이 사업에 대한 부지매입을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p> <p>○ 2007년 초기 이 사업의 방침(4권역에 설치)이 1년만인 2008년에 3권역 분 3개소가 동일 권역 동일지역 동일지점에 설치됨으로써 사업 초기와는 많은 부분에서 변질됨.</p> <p>○ 향후 주민의 반대 여론 수렴과정 등에 대한 충분한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을 신중히 추진할 것.</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20	2010. 12.2 (목)	이재형	자율방재단 의 필요성 및 발족 과정 등 자율방재단 운영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자율방재단 구성인원이 기존 동 별 직능단체회원들 위주로 됨으로써, 방재 단 특성에 맞는 인적구성이 미흡함. 이로 인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기존 직능단체 회원에 의존하는 조 직구성을 시급히 보완할 것. ○ 동시에 기존 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 원봉사 성격의 단체들을 적극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21	2010. 12.2 (목)	이재형	사회복지협의회 및 푸드뱅크 운 영현황 - 최근 2년간의 사업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뱅크 기부영수증 상의 금액을 실 제 기부금품가액보다 과도히 계상하여 발 급하는 것을 시정 할 것. ○ 관내 식품제조업체 및 가공업체, 유통 업체 등 기업 기탁처 발굴이 취약, 실질적 인 푸드뱅크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체 기탁처 발굴에 주력할 것. ○ 사회복지협의회의 정책생산 및 제기 기 능이 취약, 협회 설립의 목적과 취지에 부 합하는 본연의 제기능을 찾아야 함. ○ 사무국 관계자 및 실무자들의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 ○ 기존의 사회복지 단체, 시설, 기관 등 의 기 시행 사업이나 활동 등을 답습하지 말고 보다 협회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영 역에 대한 고민 필요. ○ 현재 후원자와 회원에 대하여 명확히 개념구분하여 후원금과 회비에 대한 수입· 지출 관리를 할 것.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22	2010. 12.2 (목)	이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체 선정 과정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위원의 전문성과 적합성 여부 - 채점의 기준인 선정 산정표 ○ 나동 건물(교통장애인협회)에 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위원의 전문성 결여, 향후 위탁체 선정 시 이의 보완이 필요.(관련 자격증, 전공 여부, 청소년사업에의 심화된 경력 등이 결여) ○ 선정 산정표의 취약, 청소년 분야 사업을 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 기준표를 적용, 내실있는 채점이 되지 못함. 이의 시정이 필요. ○ 나동 건물은 우리 구로 즉시 사용권이 반환되어야하므로 이에 대한 행정조치 취할 것.
23	2010. 12.2 (목)	이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미화원 근무실태 점검 및 U-Clean 시범사업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평2동 시범사업지 내 장비 점검 - 환경미화원 근무지 및 휴게 시설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Clean 시범사업의 핵심인 수거장비의 효율성 문제 검토 필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주민의 입장에서선 번거로움과 특히 노인층의 카드 이용에 대한 편리성 문제, 대량배출이 발생하는 업소에 대한 시스템 적용되지 못함. 가정용이라하더라도 3리터를 초과할 시에 배출의 불편, 배출기구의 위생관리의 복잡함등이 예상, 시범실시 기간에 이에 대한 충분한 보완 및 검토 필요 ○ 현재 환경미화원의 휴게시설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함. 특히 영등포동 및 영등포역 시설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영등포역 고가 밑의 시설의 경우 간이 화장실은 환경미화원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의 주민들에게도 위생상의 악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24	2010. 12.2 (목)	신홍식	<p>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외 출입국 조치에 관하여</p> <p>○ 수급자 해외 출입국 장기체류로 인한 자격보장 중지 처분자가 매년 증가추세이고 상부(서울시, 보건복지부)규정이 2010년 들어 불합리하며, 구청 단위 업무처리 관리가 더 어렵게 되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10월말 수급자 8,624가구원 중 379명 출국(90일 이상 체류자 54명), 수급자 자격 중지 처리자(2008년 18명, 2009년 36명) - 상부 규정 불합리한 내용 (2010년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해외 출입횟수에 상관없이 1회에 90일 이상 체류자만이 중지사유에 해당됨. · 2009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수시로 출입국 현황 전체를 통보받았으며, 동주민센터 통합전자민원 G4C를 통해 수시로 현황결과 반영, 대림2동은 매월 실시 관리로 만전을 기했으나 현재(2010년)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 90일 초과자만 통보해 주면 담당자가 출입국 사실 확인 후 반영하여 보장 중지 처리하고 있음. 	<p>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인식 및 통념상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로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데 반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 일반인과 이해상충이 될 수 있어 수급자 선정 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상부 규정이 불합리함을 건의, 시정을 요할 것.</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25	2010. 12.2 (목)	오현숙	<p>도립천·안양천·유수지 내 체육시설을 재난 대비 예산으로 유지관리는 부적정</p> <p>○ 도립천·안양천 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 및 하상(둔치)공원, 각종 체육시설 등이 기능별 예산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p> <p>※ 안양천·도립천 구간 내 자전거 도로의 보수공사 사업비를 치수방재과 재난 대비 하수 또는 치수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음.</p> <p>○ 유수지 내 각종 체육시설도 매년 치수방재과의 하수·치수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음.</p> <p>○ 위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별도 인력 및 행정업무도 필요하여 본연의 재난 대비 업무와도 상충되는 등 문제가 있음.</p>	<p>○ 당초 예산편성된 부서별 사업비 집행취지와도 매우 어긋난다고 보며, 향후에는 유수지 및 하천 등에 설치한 체육시설도 당초 기능인 체육관련 시설 관리부서에서 관리 또는 일상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시 기능부서에 위탁하여 시설 등 유지보수토록 하며,</p> <p>○ 하수·치수 사업비 같은 특정 재난 대비 시설비를 사실상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p>
26	2010. 12.2 (목)	오현숙	<p>민간어린이집(신기루) 운영상 문제점</p> <p>○ 열매반 1개월간 출석체크 안되어 있음.</p> <p>○ 위생복, 위생모 미착용</p> <p>○ 정리정돈 상태가 매우 불량함.</p> <p>○ 현장점검 시 원장의 소재가 불명하고 연락이 안되는 등 근무실태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됨.</p>	<p>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의 업무량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관리가 곤란한 근무여건은 이해하나, 이와 같은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할 것.</p>